



## 서울특별시 중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마포로5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
취소 및 고시

건설부고시 제345호(1979.9.21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3-89호(2003.4.15.)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도심재개발구역 변경결정된 마포로5 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구역내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이 접수되어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2(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) 규정에 따라 마포로5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코자 합니다.

가. 정비구역 현황

- 1)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마포로5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- 2) 위치(면적) :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86-1번지 일대(8,646.3㎡)

나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사항

1) 명칭 및 사무실 소재지

- 가) 명칭 : 마포로5-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
- 나) 사무실 소재지 : 서울시 중구 중림동 186-1

2) 추진위원회 승인일 : 2009. 10. 29.

3)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일 : 2015. 12. 16.

4) 승인 취소 사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‘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’ 및 ‘토지등소유자수 과반수 동의’로 추진위원회 해산신청

붙임 : 고시문(안) 1부. 끝.

